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66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김민전 · 김선교 · 정성국
강선영 · 서지영 · 김기현
인요한 · 안철수 · 나경원
백종헌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껌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30미터”를 각각 “5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u>30미터</u>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1. ----- ----- <u>50미터</u> ----- -----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u>30미터</u>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 ----- --- <u>50미터</u> ----- ----- -----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u>30</u> <u>미터</u>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을 말한다) ⑦ ~ ⑨ (생 략)	3. ----- ----- <u>50</u> <u>미터</u>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	--